

영등포구의회
제13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8. 4. 2.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고기판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 2007.5.11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에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세분화하여 쉽게 내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의원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함(안 제2조)

- 의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청렴하게 행동하며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청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포함한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13조)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2조 윤리강령 및 제3조 윤리실천 규범을 세분화하여 조문화함으로써 쉽게 내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2007.5.11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4. 2.

보 고 자 : 김 병 욱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 2006.10.04 조례 제6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의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와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의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청렴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의원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 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영등포구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의원은 직무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영등포구의회 의 각종 회의에 정시에 출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의원은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영등포구의회 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